

공 시 송 달 공 고

1. 제 목 :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

2. 관계법령

- 가.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
- 나.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
- 다.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
3. 서류의 내용

- 귀사의(귀하가 연대보증하신) 남북협력기금 대출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하였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공시송달 대상자(체납자) 및 내역

순번	채무자명	사업자(주민)등록번호	주소지	체납액(원)*
1	오*미	6401**-*****	-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27길	214,416,950
2	(주)신환	604-81-*****	-부산광역시 동구 총장대로	114,409,850
3	장*중 (디씨에프주)	5311**-*****	-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2-1	855,410,980
4	(주)서평에너지	105-87-*****	-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09-1	2,262,564,980

* '16. 8. 16. 기준

5. 문의처 : 한국수출입은행 남북경협실(☎02-3779-6620)